

서울특별시의회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8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

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

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

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,

□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

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

지원방안 마련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2조 제7호를 신설하여

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

‘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’의 정의 조항을

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4조 제3항 신설을 통해
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
불법촬영예방시스템 등의
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 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